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협동조합(협업체) 모집공고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의 협동조합(협업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체) 온라인 전용기획전 개최 및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등을 통한 매출증대로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5. 4월 ~ 12월
- 지원규모** :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체) 온라인 50개·오프라인 40개
 - * 온라인·오프라인 중복 신청 가능, 단 중복신청 시 온·오프라인 각각 등록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제출
 - (협동조합)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협업체) 이메일(coop@semas.or.kr) 제출
 - * 온라인·오프라인 별도 신청 및 계획서 작성
 - **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이 포함된 협동조합(협업체) 대상 별도트랙 5개 선정 예정
- 신청기간** : '25. 3. 26.(수) ~ '25. 4. 14.(월), 16:00
-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 온라인 지원내용 :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전용 기획전 개최 및 프로모션 지원을 통한 온라인 판로 진출 확대

구 분	세부내용	
(필수)	① 선정 이후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유통플랫폼 POC 내에서 최소 1개 이상 입점 및 상품등록 * 등록기한 : 선정일 기준 3개월 이내 ** 선정이후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가능 수 조정가능 ② 마케팅기법, 판매전략교육 등 온라인 판매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수료 필수	
온라인 진출 기반 구축	MD상담회	업체 또는 품목별 맞춤형 MD상담회 진행(2회)
	기초체력	상세페이지 제작, 브랜딩,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패키지 개발 중 1개 선택지원
국내 온라인 판로 확대	온라인 유통플랫폼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 내 전용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라이브 커머스 (12개)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진행 및 연계 특별 기획전 진행 * 사업 참여 조합 중 우수조합(매출, 후기,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지원
	O2O 연계지원 (5개)	국내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해외수출	온라인 입점 (10개)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내 전용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수출 준비지원 (10개)	해외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문 상세페이지 제작 등 수출 준비 지원 * 해외 플랫폼 입점안되어 있는 곳에 한정
	수출 확대지원 (5개)	해외플랫폼 기입점 협동조합 대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용 기획전, 마케팅 등을 통한매출확대 지원 * 해외플랫폼 기 입점되어 있는 곳에 한정

* 기초체력은 '25년 공동사업(브랜드, 마케팅)과 중복 지원 불가

** 국내 온라인 플랫폼(안) :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5개사 내외 선정 예정

해외 온라인 플랫폼(안) : 쿠팡, 아마존 등 해외 유통플랫폼 1~2개사 선정 예정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오프라인 지원내용 : 유명 박람회 단체·개별참가 지원, 유통상담회, 성과관리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 진출 확대

구 분	세부내용	
필수	① 선정 이후 공단이 지정한 단체참가 박람회 최소 1개 이상 참가 ② 판매전략, 고객 유지 방법 등 기본 교육 및 단체 참여 박람회별 참여안내 및 유의사항 교육 등	
오프라인 진출 기반 구축	유통상담회	제품 품평회 및 박람회 판매 시 상품경쟁력 진단을 위한 전문가 강의, 컨설팅 지원(2회)
	족자봉 제작 (10개)	부스 내 협동조합(협업체) 및 상품 홍보용 족자봉 제작 지원 * 기존 족자봉제작 지원이력이 있는 협동조합(협업체) 제외
	부스 운영 컨설팅 (10개)	전문 비주얼디렉터의 협동조합 부스 컨셉 설정, 상품 진열 방법, 상품 홍보 스토리텔링 등 상품 홍보 지원 * 기존 부스 운영컨설팅 지원이력이 있는 협동조합(협업체) 제외
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단체참가 지원	협동조합(협업체) 대상 공동관 형태의 단체참가지원(최대 3회)
	홍보지원	친환경 포장용품 지원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 (40개)	① 협동조합(협업체)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30개사) ② 지자체·타 부처 주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10개사)
	해외 박람회 참가 (5개)	부스설치 집기 임차 물류비 등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비용(최대 5백만원) 지원 * 국내 개별 박람회 중복참여 가능
판로연계 지원	O2O 연계지원 (20~30개)	박람회 연계 우수 조합 상품 온라인 기획전 개최
	수출 연계지원 (10개)	공단 내·외부 수출 관련 사업, 해외 바이어 상담회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확대

* '25년도 공동사업(마케팅_박람회 참가)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자격요건]

구 분	구성요건
공통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조합원(5인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협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하거나 발급예정인 협동조합(협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예정인 경우, 선정일기준 1개월 이내 보완제출 필수
자격요건 (①,②번 中 택1)	① (매출액)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이상 ② (매출증가)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5%이상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4년 이후 신규 설립 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 선정일 기준 1개월 내 통신판매업 신고증 미제출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하며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포함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불가

□ 우대사항(최대 10점)

구 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2점)	이사장(대표)이 청년이거나 또는 전체 조합원(구성원) 중 청년이 50% 이상인 경우 * 청년 : 공고일('25.3.26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5.3.26일 이후 출생자)
여성(2점)	이사장(대표)이 여성이거나 또는 조합원(대표)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장애인(2점)	이사장(대표)이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조합원(구성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BM경진대회(2점)	'23~'2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백년소상공인(5점)	협동조합(협업체) 또는 조합원(구성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스마트제조(5점)	협동조합(협업체) 또는 조합원(구성원) 1인 이상이 스마트제조지원(舊 스마트공방)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5점)	협동조합(협업체) 또는 조합원(구성원)이 중기부(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중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 협동조합(협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협업체) 및 조합원(구성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협업체) 및 조합원(구성원)
-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23년~'24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판로지원사업만 해당)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협업체) 및 조합원(구성원)
 -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5. 3. 26.(수) ~ 4. 14.(월), 16: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및 이메일 신청

1. 협동조합

-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24(sbiz24.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처 등)는 [참고3-1, 참고4] 참조
-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2. 협업체

- ① 협업체 **전원이** '소상공인24(sbiz24.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 협업체 대표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메일 제출**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및 증빙서류 스캔 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처 등)는 [참고3-2, 참고4, 참고6, 참고7] 참조
-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5

유의 및 의무사항

□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시 아래 유의사항 필독

유의사항

-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협동조합) 및 메일(협업체)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24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 ②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혹은 전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하며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게 책임이 있음
- ④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유의
- ⑤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연도 포함 향후 2년간(~'27년) 사업 지원 불가
- ⑥ 同 사업 선정 시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⑦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신청,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 의무 사항 : 사업 선정된 조합은 아래 의무사항 이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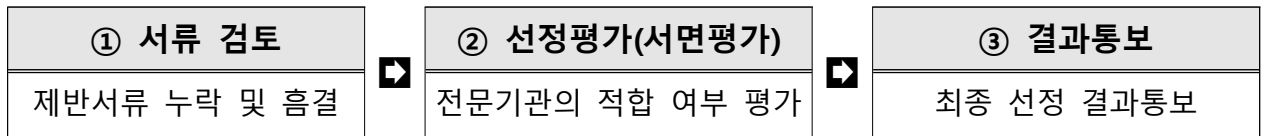
의무사항

- ①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협업체)의 조합원(구성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온·오프라인)을 1회 이상 필수 참여 및 수료증 제출
- ② 박람회 참가하는 조합은 박람회 지각, 무단불참, 운영인력2명 이상주, 무단 조기종료 등 불성실한 참여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해야 함.
- ① 사업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중 최소 1개사 내 입점 및 상품등록 해야 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
- ③ '25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익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 제공 의무 있음.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 평가 방법

-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
 -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선정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보완을 목적으로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즉각 반려 처리 될 수 있음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② (선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신청 협동조합(협업체)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심의위원회(선정평가) 진행

- (평가항목)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등

③ (결과통보) 홈페이지 신청 결과 확인 및 전문기관 이메일 개별 통보

□ 향후 추진 일정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모집공고										
지원조합 선정										
사업추진										
사업완료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8, 7926

※ 제출서류

- (서식) 1. 2025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2025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참여확약서

- 【참고】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2.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확인 기준
 3-1. 제출서류(협동조합)
 3-2. 제출서류(협업체)
 4. 제출서류 발급처
 5. NICE 원클릭서비스 이용방법(협동조합)
 6. 협업체 신청서.
 7. 협업체 구성원 명부. 끝.

참고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신설)	가상자산 매매 및 증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신설)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

예외규정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 단,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 ③ 상기 ①,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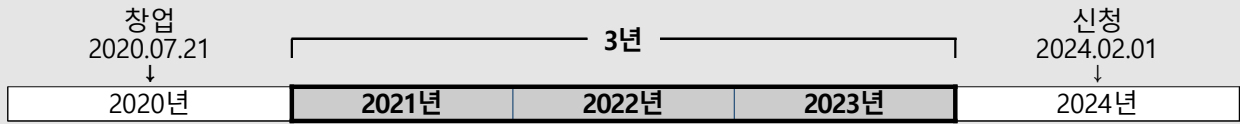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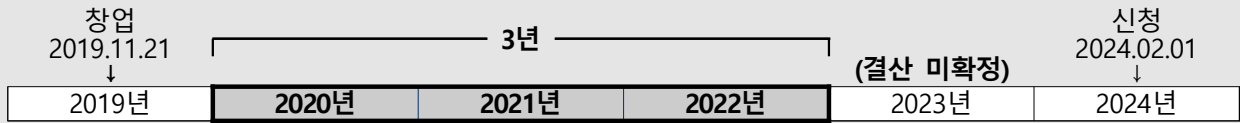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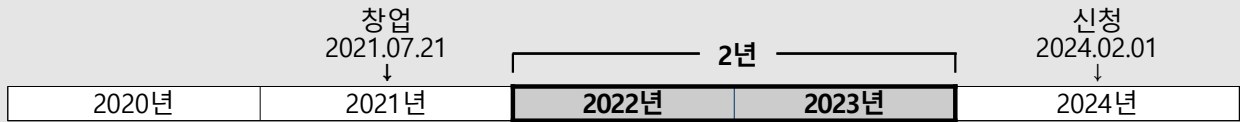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21년~2023년 매출액 합계)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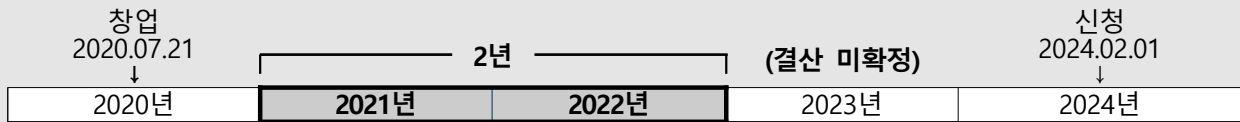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20~2022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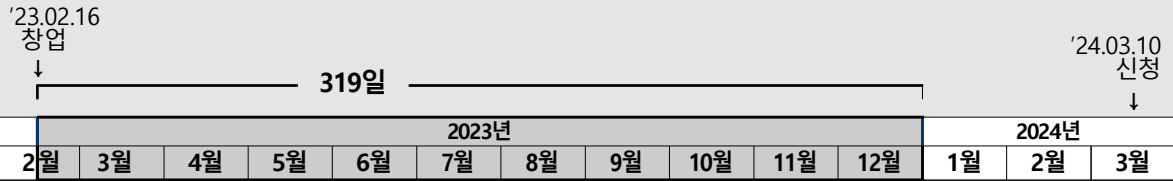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22년~2023년 매출액 합계) / 2



☞ 평균매출액등 : (2021년~2022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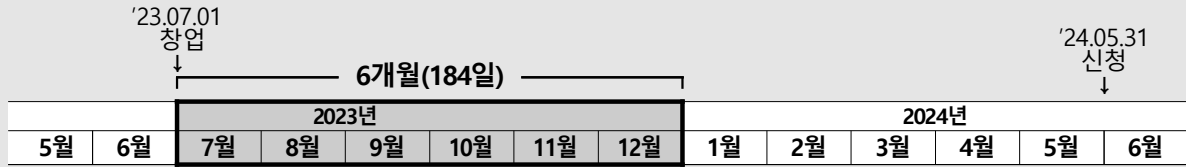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3.02.16~'23.12.31 매출액(A) 연환산 (= (A/319일) × 365일)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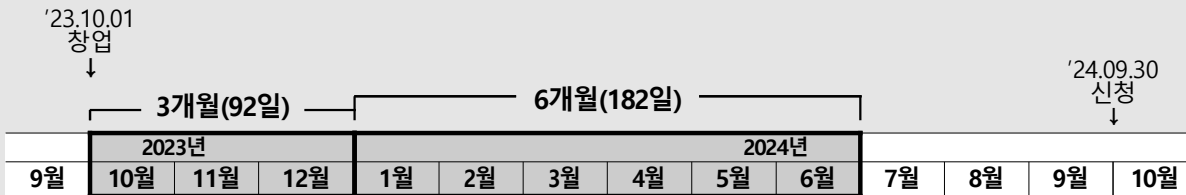
- ① '23.08.16~'23.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A/138일) × 184일)
- ② '24.01.01~'24.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B)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23.07.01~'24.12.31 매출액(A) 연환산 (= (A × 2) or { (A/184일) × 365일 })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23.10.01~'23.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A × 2) or { (A/92일) × 184일 })

② '24.01.01~'24.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B)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2024년 6월 2일 ~ 2024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8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9년~2021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2년 6월에 지원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21.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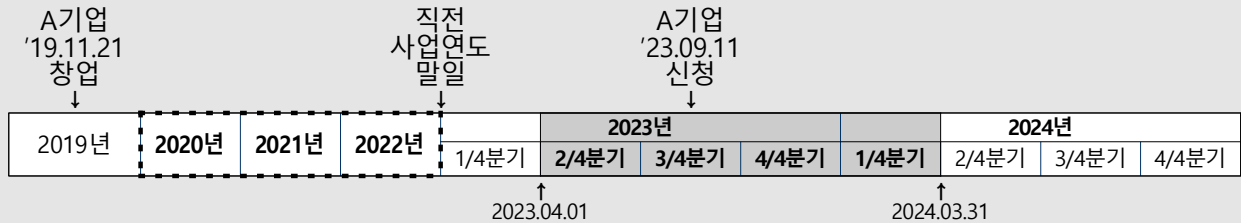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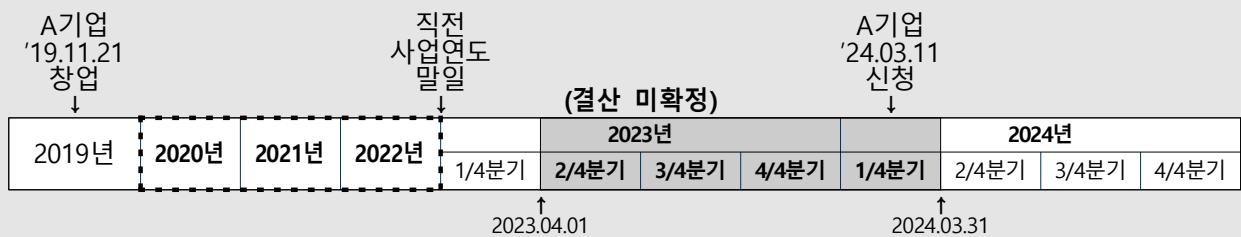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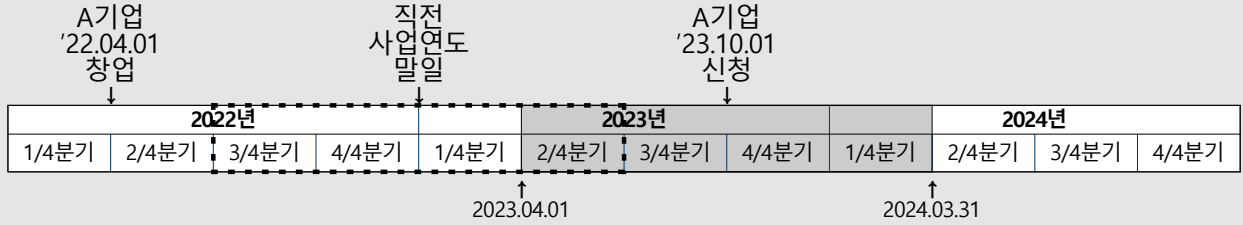


☞ A기업 2023년 09월 11일 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20년~2022년)의 평균매출액 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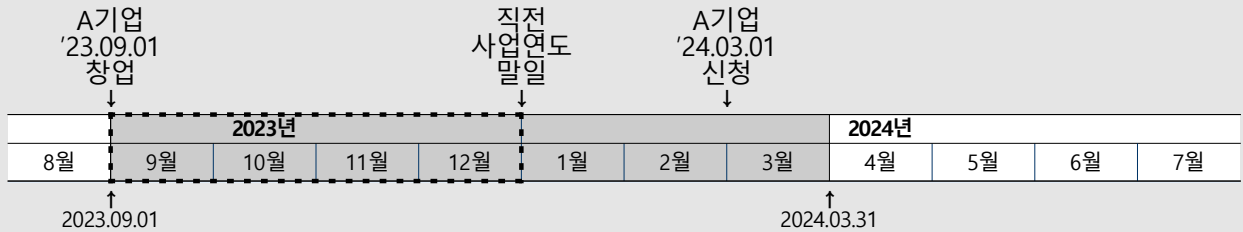


☞ A기업 2024년 03월 11일 신청 → (2023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20년~2022년)의 평균 매출액 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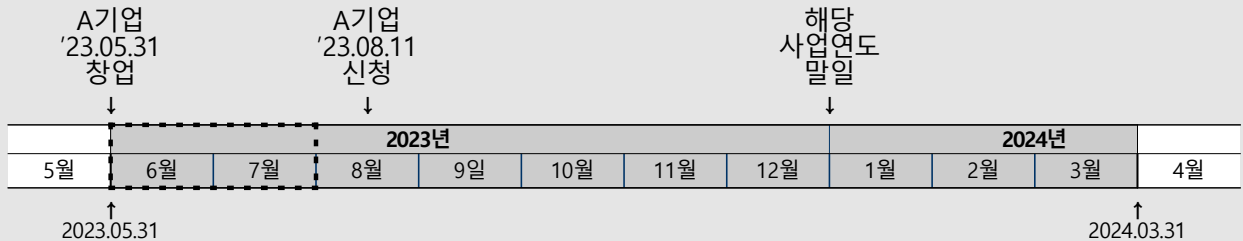


☞ A기업 2023년 10월 01일 신청 →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 평균 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4월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4년 03월 01일 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 A기업 2023년 08월 11일 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3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 2023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5월 3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3]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2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㉓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3. 11. 20	'24. 1. 31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2	'23. 2. 5		(최근 12개월) '23년 3월~'23년 12월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21.3.26 지원 신청할 경우, 2020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9년 11월 2일, 신청일: '21년 3월 제출기간: '20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0년 5월부터 1명 고용</p> <p>(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2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4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참고3-1

제출서류(협동조합)

□ 판로지원(온오프라인)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협동조합
	(2) <서식1 또는 3>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3)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원 전원
	(4) <서식4 또는 5> 사업 참여 협약서	등기임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사업자 등록증명 NICE 연계	- 소상공인이 아닌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이사장
소상공인 확인서류 NICE 연계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조합원 전원
조합원 명부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매출액)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이상 → 24년 매출 확인서류 (매출증가) '23년 대비 '24년 매출 5%이상 증가 → 23, 24년 매출 확인서류	협동조합
통신판매업 신고증 (선택)	- 상호명 및 대표자 정보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과 일치 - 온라인 판로지원 신청자만 제출	협동조합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협동조합

참고3-2 제출서류(협업체)

□ 판로지원(온오프라인)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작성서류	(1) <참고6> 사업신청서	협업체 대표
	(2) <서식1 또는 3> 사업계획서	협업체
	(3)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성원 전원
	(4) <서식4 또는 5> 사업 참여 협약서	구성원 전원
사업자 등록증명	- 소상공인이 아닌 구성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업체 대표, 구성원 전원
세금납부 확인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협업체 대표, 구성원 전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협업체 대표, 구성원 전원
구성원 명부	-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필수 - 신청일 기준 구성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업체
매출증빙 서류	- 아래 서류 중 협업체 대표 사업자 기준 1부 제출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매출액)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이상 → 24년 매출 확인서류 (매출증가) '23년 대비 '24년 매출 5%이상 증가 → 23, 24년 매출 확인서류	협업체 대표
통신판매업 신고증 (선택)	- 상호명 및 대표자 정보 협업체 사업자등록증과 일치 - 온라인 판로지원 신청자만 제출	협업체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협업체

참고4

제출서류 발급처

연번	서류명	발급처
1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오프라인] 법원등기소,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2	- 사업자등록증명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3	- 소상공인 확인서	[온/오프라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
4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5	-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오프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과 함께 팩스/방문 제출
6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온/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7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온/오프라인] 신청업체(세무대리인) 신고서 사본 (세무대리인 또는 신청인 날인)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8	- 표준재무제표증명	
9	-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1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1	- (국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12	- 지방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위텍스(www.wetax.go.kr)
13	- (온라인)통신판매업 신고증	[온/오프라인] 관할 시청, 구청 정 부 24 (www.gov.kr)

["NICE원클릭서비스"]

* "NICE원클릭서비스"란?

⇒ 제출서류 중 일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류, 세금납부 확인서류, 매출증빙서류)를 고객의 pc에서 공단 사업시스템으로 비대면 일괄 발급 및 전송 서비스

1. NICE평가정보 원클릭서비스 이용(연계)방법

-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2. 제출서류 첨부 시 NICE 원클릭서비스 연계 관련 유의사항

(NICE원클릭서비스 연계 조합)

1. [기본정보]탭에서 협동조합명, 조합구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NICE** 버튼 클릭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류, 세금납부 확인(국세, 지방세), 매출증빙서류가 연결되어 자동첨부 완료*
- * 단, NICE원클릭서비스에서 조합이 발급·제출한 서류에 한해서만 자동첨부
4. NICE 원클릭서비스 자동첨부 서류 외에 별도 첨부해야하는 나머지 서류(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출자자 명부 등)는 조합에서 직접 첨부
5. [사업비]탭에서 사업비 집행계획 입력
6. [조합원]탭에서 조합원 정보 입력
7. 다시 [기본정보]탭으로 이동 후 **NICE** 버튼 클릭

(NICE원클릭서비스 미연계 조합)

1. [기본정보]탭에서 협동조합명, 조합구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NICE** 버튼 클릭하여 해당링크 이동 후 가입 후 이용 또는 **공고상의 제출서류** (공고문 4~6Page)를 확인하여 조합에서 직접 모든 서류 첨부
3. [사업비]탭에서 사업비 집행계획 입력
4. [조합원]탭에서 조합원 정보 입력
5. 다시 [기본정보]탭으로 이동 후 **NICE** 버튼 클릭

※ 단, 협업활성화 홈페이지에 기 등록되어 있는 조합 중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탭에서 조합원 변경정보 입력 후, 다시 [기본정보]- **NICE** 버튼을 클릭 필수 (**NICE** 버튼을 재클릭해야만 변경된 조합원 정보로 입력 가능)

참고7**협업체 구성원 명부(서식)****협업체 구성원 명부**

구분	성명 (법인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판매상품
대표 기업						
1						
2						
3						
4						
5						

* 협업체 구성원 전원 해당 항목 작성 필수

위는 본 협업체의 구성원 명부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협업체 대표기업 (인)